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4. 12. 19.(금)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김 양 희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14년 12월 1일

다. 회부일자: 2014년 12월 2일

라. 상정일자: 2014년 12월 10일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양희 의원)

가. 제안이유

본 조례는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맞춤형 교육지원과 일반학생에 대한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다문화 가족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과 사회통합능력을 향상시키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근

거를 마련하기 함.

※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학생 증가추세

2012년 2,113명 → 2013년 2,520명 → 2014년 2,999명

나. 주요내용

- 1) 다문화교육 기본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2) 다문화교육 진흥 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9조)
- 3)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11조)
- 4)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5) 다문화교육 진흥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대회)

- 본 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10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최근 충청도내 다문화가족과 다문화 가족자녀들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가 급증하면서 다문화가족 초·중·고등학교 학생도 2012년 2,113명, 2013년 2,520명, 2014년 현재 2,999명으로 증가하고 있어,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정책 마련과 지속적인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되는 이번 조례안은 시기적절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 조례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3조의 다문화교육 기본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은 다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다문화 교육의 체계화와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사료되며,
- 다문화교육 진흥 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안 제4조에서부터 안 제9조는 도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과 시행, 평가에 대해 심의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다문화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다문화교육을 실제로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타당한 규정이라고 판단됨. 다만, 위원회의 심의기능과 역할이 실질적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한 세부사항이 시행규칙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0조와 제11조의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위탁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의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협조를 유도하고, 다문화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높여 우리지역의 다문화가족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다문화교육 창출과 교육만족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 론 요 지: “생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첨부서류: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다문화가족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이 조례에서 “다문화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미한다.

1. 제1항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한국 사회·문화이해 등의 교육
2. 일반학생과 학부모 대상의 다문화 이해 및 인식제고 교육
3. 교직원 대상의 다문화 및 다문화가족 학생·학부모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증진 교육

제3조(기본계획 수립)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연초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교육 시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
5.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며, 남녀 어느 한쪽 성(性)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북도교육청 부교육감
2.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장
3. 충청북도의회 의원
4. 다문화 관련 학자 및 전문가, 공공기관, 단체 및 센터 등의 업무 관계관
5. 도내 3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학생의 학부모
6. 그 밖에 다문화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연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 학생 및 학부모 대상의 교육·상담
2. 다문화가족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일반학생 및 학부모 대상의 다문화 이해 교육
4. 교직원 대상의 다문화 및 다문화가족 학생·학부모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증진교육
5.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문화가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다문화교육 중점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중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문화교육 중점학교는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

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 및 가정 환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등이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교재와 강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아동 보육·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8조(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관내에서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로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추계내용

- 재정수반요인
 -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제9조, 제11조에 따른 예산 추계

2. 비용추계

-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이 시행되면 129,840천원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됨(매년 확대 예정)

(단위:천원)

구 분 \ 년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다문화가정교육지원센터	39,840	40,800	42,000	44,000	46,000
다문화중점학교	90,000 (12교)	90,000 (12교)	105,000 (14교)	105,000 (14교)	112,500 (15교)
합 계	129,840	130,800	147,000	149,000	158,500

3.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기초자료 및 세부내역
 - 다문화가정교육지원센터: 39,840천원
 - 학부모 교육(한글교실 및 문화교실 운영): 21,600천원
 - 학생 교육(자녀학습실 운영): 18,240천원
 - 다문화중점학교(매년 확대 운영 예정)
 - 7,500천원 × 12교 = 90,000천원

4. 작성자 : 충청북도교육청 진로인성교육과 국제교육담당

행정7급 남 윤 미 (290-2106)